

의안 번호	1797	【울산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일 자 : 2021. 8. 5.(목)
- 나. 발 의 자 : 박경흠의원 외 7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8. 20.(금)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9. 7.(화)

2. 제안설명 요지(박경흠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등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로 이
용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
황으로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및 구
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 이용자 준수사항(안 제6조)

다.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정희)

-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확대와 이용자의 급증으로 관련 「도로교통법」(2021.1.12. 일부개정, 2021.7.13.시행)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 설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자에 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허용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 본 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문화 조성과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따른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시기 적절하게 조례 제정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조례 제정 현황 (2021. 8. 31. 기준)

- 울산 1개 시구군 (울산광역시 2020. 7. 9. 제정)
- 전국 총 66개 시·군·구 제정